

2019.07.

2019년 세법개정안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기타

1. 조세심판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국기법 §78, 국기령 §62의2)

□ 개정 전

세법해석에 관한 종전 결정례가 없는 경우, 종전 세법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장이 결정함

□ 개정내용

상임조세심판관회의(원장 포함)에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사유에 해당하여 합동회의에서 심리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함

□ 개정의 효과

종래 조세심판원장이 행사하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권한을 상임조세심판관회의로 이관함으로써,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가 좀더 엄격해져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종전보다 존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 (국기령 §62의2 ③)

□ 개정 전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정내용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에 중요 사실관계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 오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등' 문구 삭제)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정의 효과

조세심판원장의 재심리 요청 사유를 제한하여,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종래 조세심판원장이 재심리 요청의 형식으로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제한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질 것임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국기법 §26의2)

□ 개정 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또는 15년)

□ 개정내용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시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또는 15년) 또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개정의 효과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추가한 취지임. 명의신탁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후 오랜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영구히 연장된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 다만, 2019. 12. 31. 이전에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3.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국기령 §63의15)

□ 개정내용

납세자보호관의 직무에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명령 및 징계요구를 추가함.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에 세무조사 실시 중에 세무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것을 추가함

□ 개정의 효과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투면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위법사유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분부터 적용

4.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국기법 §45, §45의2)

□ 개정 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만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함

□ 개정내용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대상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도 추가함

□ 개정의 효과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국기법 §48)

□ 개정 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1~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20%를 감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6개월~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20%를, 1~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를 감면

□ 개정내용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1개월 이내에는 50%, 1~3개월 이내에는 30%, 3~6개월 이내에는 20% 감면하는 것으로 보다 세분화 함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3개월 이내에는 75%, 3~6개월 이내에는 50%, 6개월~1년 이내에는 30%, 1년~1년 6개월 이내에는 20%, 1년 6개월~2년 이내에는 10% 감면하는 것으로 보다 세분화 함

□ 개정의 효과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이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을 놓쳤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조속히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었음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신설 (국징법 §7의5, 관세법 §116의4)

□ 개정내용

과세관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감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체납자를 30일 이내 기간 동안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제도가 도입됨. 고액·상습체납자란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을 하고 있어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를 의미함

□ 개정의 효과

고액·상습채납자가 줄어들어 채납징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채납하는 분부터 적용

CONTACT



곽태훈 변호사
02-528-5752
thkwak@yulchon.com



신병진 변호사
02-528-5160
byjinshin@yulchon.com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